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
2020.6.9.(화)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오 문 석

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---

본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제출, 2020년 6월 1일 산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된(의안번호 제427호) 안건임.

---

## 1. 발의자 : 박문희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5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## 3. 제안 이유

- 농촌체험마을 등이 관련 사업 추진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과 사업평가 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(안 제2조)

나. 농촌체험마을 등 사업운영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 해야 하는 단서조항 신설(안 제4조)

다. 체험마을 등의 사업평가 시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연도 지원액의 변경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10조)

## 5. 검토의견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는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제명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
  -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3호(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 사업자의 지정)에 따라 농촌체험마을 등 사업운영 시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  - 안 제 10조는 농촌체험마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의 변경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험마을 운영의 책임성과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
-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마을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, 절차상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